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 김주영·김승원·홍기원

박영순 · 이용우 · 임호선

이수진(비) · 노웅래 · 윤영덕

오영환 · 박 정 · 황운하

조응천 · 장경태 · 이광재

윤재갑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·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러나, 통관업무를 소개·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통관업무를 소개·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,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자"를 "자(이하 "관세사등"이라 한다)"로, "된다"를 "되고,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·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·향 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통관업의 제한) ① (생	제3조(통관업의 제한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	2
에 규정된 <u>자</u> 에게 제2조의 업	<u>자(이하 "관세사등"이</u>
무를 소개·알선하고 그 대가를	라 한다)
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	
<u>다</u> .	되고, 관
	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·
	<u>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·향응</u>
	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
	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
	<u>니 된다</u> 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